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. 비실명처리일자 : 2024-02-23

제 주 지 방 법 원

제 1 행 정 부

판 결

사 건	2023구합5787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원 고	A 주식회사
	소송대리인 법무법인 ○○
	담당변호사 이○
피 고	○○시장
	소송대리인 변호사 이○○
변 론 종 결	2023. 10. 31.
판 결 선 고	2023. 12. 12.

주 문

1. 피고가 2022. 3. 31.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92,354,030원(가산세 포함)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. 비실명처리일자 : 2024-02-23

이 유

1. 처분의 경위

가. 원고(변경 전 상호 : B 주식회사)는 2018. 8. 21. C으로부터 그가 보유한 주식회사 D(이하 'D'라고 한다) 발행주식 전부(이하 '이 사건 주식'이라 한다)를 500,000,000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(이하 '이 사건 제1계약'이라 한다)을 체결하였고, C에게 같은 날 계약금으로 300,000,000원을, 2018. 8. 31. 중도금으로 100,000,000원을 각 지급하였다.

나. E 주식회사(이하 'E'이라 한다)와 그 특수관계인인 F, G, H, I(이하 통틀어 'E 등'이라 한다)는 2018. 9. 21. J 주식회사(이하 'J'이라 한다)에 E 등이 보유한 원고 발행주식 합계 9,353,660주(지분율 42.24%, 이하 '이 사건 원고 발행 주식'이라 한다)를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(이하 '이 사건 제2계약'이라 한다)을 체결하였다.

다. J은 이 사건 제2계약에 따라 이 사건 원고 발행 주식을 인수하기 위하여 원고에 대한 실사를 진행하던 중 원고가 이 사건 제1계약을 체결하여 D를 자회사로 보유할 예정임을 인지하게 되었다. 이에 J은 2018. 11. 21. E에 '향후 D의 조세 문제 등으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E 등이 이를 배상한다'는 취지의 조건을 추가하는 것으로 이 사건 제2계약의 변경을 요구하였다.

라. 이에 대하여 E은 2018. 11. 30. J의 위 요구를 거절하는 대신 J이 이 사건 주식 취득으로 잠재적 재무위험을 부담할 필요가 없도록, E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그 취득가격 500,000,000원에 그대로 매수하는 방안을 제안하였고, J은 E의 제안에 합의하였다.

마. 위와 같은 J와 E의 합의에 따라, E은 2018. 12. 31.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

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. 비실명처리일자 : 2024-02-23

500,000,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. 이에 원고는 같은 날 C에게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잔금 100,000,000원을 지급하여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주권을 교부받은 후 곧바로 E으로부터 500,000,000원을 지급받고 E에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주권을 교부하였다.

바. 이후 J과 E 등은 2019. 1. 2. 이 사건 제2계약의 거래종결에 합의하였고, 이에 따라 J은 E 등에 295,809,497,5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원고 발행 주식을 취득하여 원고의 주주가 되었다.

사. 피고는, 원고가 2018. 12. 31.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여 D의 과점주주가 되었으므로, 구 지방세법(2023. 3. 14. 법률 제192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, 이하 '구 지방세법'이라 한다) 제7조 제5항,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에 따라 그로 인한 취득세 신고·납부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불이행하였다고 보아, 2022. 3. 31. 원고에게 취득세 등 합계 92,354,030원을 부과하였다(이하 '이 사건 처분'이라 한다).

아.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, 조세심판원은 2023. 4. 11.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.

[인정 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7호증, 을 제1 내지 6호증(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

가. 원고의 주장

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가 정한 과점주주가 되기 위해서는 과점주주가 그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.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것은 원고 스스로 이 사건 주식의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려고 한 것이

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. 비실명처리일자 : 2024-02-23

아니라 E에 이 사건 주식을 즉시 넘겨주기 위한 것이었다. 실제로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하루도 보유하지 않은 채 바로 E에 넘겨주었다. 따라서 원고는 D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,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할 수 없다.

나. 관계 법령

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.

다. 판단

1) 관련 법리

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전문은 간주취득세 납세의무에 관하여 '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'고 규정하고 있다. 여기서 과점주주란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에 정한 바와 같이 주주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를 말한다.

과점주주는 해당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·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게 되어 실질적으로 그 재산을 직접 소유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보아 위와 같은 조항을 둔 것이다. 그러나 이미 해당 법인이 취득세를 부담하였는데 그 과점주주에 대하여 다시 동일한 과세물건을 대상으로 간주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, 모든 과점주주에게 간주취득세를 부과해서는 안 되고 의결권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사실상 지배할 수 있는 과점주주에게만 간주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위 조항을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.

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. 비실명처리일자 : 2024-02-23

따라서 주주명부에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지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간주취득세를 낼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(대법원 2019. 3. 28. 선고 2015두3591 판결 참조).

2) 구체적 판단

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, 앞서 인정한 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, 갑 제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,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간주취득세를 부담하는 과점주주가 되지는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.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.

①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,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할 2018. 12. 31. 당시 원고의 의사는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여 그 주주권을 행사하려는 것이 아니라 원고의 최대주주인 E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여 E에 즉시 이전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.

② 실제로 원고는 2018. 12. 31.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잔금을 지급하여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후 곧바로 E에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였다. 당시 원고는 원고의 최대주주인 E과 최대주주가 될 예정인 J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주식의 주주권을 실제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.

③ 원고가 이 사건 제1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여 D의 운영을 지배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인다. 그리고 원고는 2018. 8. 31. 중도금 지급 후부터 D로부터 그가 보유한 모든 대여사업용차량의 운용 권한을 이전받아 차량 관리 및 대여 영업을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.

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. 비실명처리일자 : 2024-02-23

그러나 원고가 D의 과점주주인지 여부는 이 사건 주식의 취득시점인 2018. 12. 31.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인데,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취득시점에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여 그 주주권을 행사하려는 의사가 없었고, 그 주주권을 실제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도 않았다. 또한, 원고가 D로부터 대여사업용차량의 운용 권한을 이전받은 것은 별도의 차량위탁운용계약에 따른 것이었고, 이 사건 주식의 주주권 행사에 따른 것은 아니었다.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 원고가 D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.

④ 원고는 2018. 12. 31. E에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면서, 그 주식양수도계약에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되사올 수 있는 우선매수청구권을 규정하였다.

그러나 원고가 실제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것이 아닌 이상,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우선매수청구권을 보유한다고 하여 이 사건 주식의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게 되는 것은 아니다.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D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.

⑤ 결국 위와 같이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한 경위와 목적, 이후 이 사건 주식 양도 경과 등을 종합하면, 원고가 이 사건 주식 취득 시점에 이에 관하여 의결권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D의 운영을 지배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. 비실명처리일자 : 2024-02-23

재판장 판사 김○○

판사 박○○

판사 강○○

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. 비실명처리일자 : 2024-02-23

관계 법령

▣ 구 지방세법(2023. 3. 14. 법률 제192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

제7조(납세의무자 등)

① 취득세는 부동산, 차량, 기계장비, 항공기, 선박, 입목, 광업권, 어업권, 골프회원권, 승마회원권, 콘도미니엄 회원권,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(이하 이 장에서 "부동산등"이라 한다)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.

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「지방세기본법」 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(이하 "과점주주"라 한다)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(법인이 「신탁법」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·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등을 포함한다)을 취득(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)한 것으로 본다. 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「지방세기본법」 제44조를 준용한다.

▣ 지방세기본법

제46조(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)

법인(주식을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)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(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의 경우에는 납기개시일)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. 다만,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(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수(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)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.

2.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(이하 "과점주주"라 한다)